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별표(제2조 관련) ‘2.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추가
- 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오류 정비(제2조)
- 다. 별표 내 인용 법령명 표기 정비 및 항목 부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00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한다.

2026년 00월 0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방송법 제2조제1호”를 “「방송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가목, 마
목, 아목, 자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아.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 자.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카.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
및 통신관련 단체 및 협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방송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 ----- 제2조제2호----- ----- ----- ----- -----.												
〔별표〕 <u>관리대상 물자업체 및 기관(제2조관련)</u>	〔별표〕 <u>관리대상 물자업체 및 기관(제2조관련)</u>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범위</th></tr> </thead> <tbody> <tr> <td>1. 관리대상 물자</td><td>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 설비, 장비 등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td></tr> <tr> <td>2.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td><td>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 라. 삭제 <2014.3.10.> 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바. 삭제 <2014.3.10.> 사. 삭제 <2014.3.10.> 아.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 및 통신관련 단체 및 협회</td></tr> </tbody> </table>	구분	범위	1. 관리대상 물자	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 설비, 장비 등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	2.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 라. 삭제 <2014.3.10.> 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바. 삭제 <2014.3.10.> 사. 삭제 <2014.3.10.> 아.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 및 통신관련 단체 및 협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범위</th></tr> </thead> <tbody> <tr> <td>1. 관리대상 물자</td><td>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용 설비, 장비 등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td></tr> <tr> <td>2.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td><td>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 라. 삭제 <2014.3.10.> 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바. 삭제 <2014.3.10.> 사. 삭제 <2014.3.10.> 아.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카.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 및 통신관련 단체 및 협회</td></tr> </tbody> </table>	구분	범위	1. 관리대상 물자	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용 설비, 장비 등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	2.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 라. 삭제 <2014.3.10.> 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바. 삭제 <2014.3.10.> 사. 삭제 <2014.3.10.> 아.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카.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 및 통신관련 단체 및 협회
구분	범위												
1. 관리대상 물자	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 설비, 장비 등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												
2.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 라. 삭제 <2014.3.10.> 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바. 삭제 <2014.3.10.> 사. 삭제 <2014.3.10.> 아.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 및 통신관련 단체 및 협회												
구분	범위												
1. 관리대상 물자	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용 설비, 장비 등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												
2.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 라. 삭제 <2014.3.10.> 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바. 삭제 <2014.3.10.> 사. 삭제 <2014.3.10.> 아.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카.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 및 통신관련 단체 및 협회												